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 31.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에 대한 정·재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8. 14.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당초 재계와 합의한대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완내용과 함께 그 동안 엄격히 제한해 왔던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관련된 정·재계 합의 5개 사항으로는 ①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을 당초 2001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 연장, ②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대상이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의 대상으로 전환, ③ 법정관리 또는 화의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의 신설, ④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단, 계열 분리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해소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 ⑤ 30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폭 완화 등이 있고, 둘째, 기타 규제완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사항으로는 ① 회사정리·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동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 ②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 ③ 과징금 납부기간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기간 조정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발간

지난 4. 1. 창립 2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를 발간하였다.

「20년사」는 공정거래제도 발전의 연혁(제1편), 공정거래정책의 부문별 운용실적과 평가(제2편), 새로운 환경변화와 공정거래정책 방향(제3편)의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주요통계, 역대간부명단, 주요일지, 기구 변천,

공정거래법 변천 개요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20년사」의 발간으로 우리 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역사를 개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통계자료 및 공정거래제도 시행 20년간 있었던 에피소드 등이 수록되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보급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납품업체가 하도급계약시 사용하게 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2001. 7월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금번 개정취지는 자동차업계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관행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여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또한 그간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제도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품업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 기술협력 네트워크체제 구축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계약서는 하도급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자동차부품개발의 활성화와 기술협력체제 구축, 정보화 등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정위는 2001년 7. 26.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였는데,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50.8조원으로 전년 대비 4.9조원 증가하였으나 증가속도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금액은 총 23.8조원으로 예외인정대상(10.7조원) 및 해소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금액(2.1조원) 등 12.8조원을 제외하면 해소대상 출자금액은 11조원 수준으로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될 출자주식금액

은 2조~4조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에 비해 1.6%p 증가하여 총수 1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하여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공정위는 출자한도초과분이 해소시한(2002. 3월말)내 무리 없이 해소되도록 연중 분산매각을 유도하고, 해소시한 내에 한도초과출자 미해소 기업에 대하여는 엄중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 종합 제공 등 소비자정보제공 강화 방안 추진

공정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정보를 고시하고 있으며, 동 법에 의

거, 중요정보항목 선정시 다른 법령에 표시·광고 의무화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표시·광고 규제를 기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주요 업종(36개)에 대해 각 개별법령상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 과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소비자종합홈페이지'

(www.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존의 중요정보항목 이외에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중요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표시·광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요정보고시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택배표준약관」 승인

공정위는 택배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2001. 7. 11. 승인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는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화물 운송장에 사업자 및 송·수하인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전화번호 및 화물의 가액(손해배상시 산정기준), 특별한 주의사항 등을 사업자와 고객이 각각 직접 기재토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파손·멸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신에 운송상 특별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은 할증요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수

하인 부재시에는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를 수하인에게 통지토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위탁한 화물을 안전하게 인도하지 못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실제 피해액을 보상토록 하고, 고객이 운송 의뢰한 택배의 배송시간을 소비자보호를 위해 명시하며, 사업자가 화물 운송장에 기재한 일방적 면책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삭제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운임 청구는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미 운임을 받은 경우는 이를 환불토록 하였다.

40개 음식점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위는 음식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1. 8. 7. 서울 및

주요 광역시 소재 40개 혼인음식장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음식점 이용객 등에게 일방적

으로 불리한 불공정조항을 시정조치하였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한 조항은 ① 사업자가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②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③ 예식장측이 해약할 경우 수령한 계약금만 배상토록 한 조항, ④ 예식 행사장의 안전사고 책임을 혼주측에 전가시키는 조항 등이다.

이번 조치는 2001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식장 이용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예식장 이용관련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혼인예식장이용표준 약관을 승인, 보급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및 무효취지】

| 약관 조 항 | 무 효 취 지 |
|---|--|
| 1. 계약금 불반환 조항 예 :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제3호에 해당됨 |
| 2. 답례품 금지 조항 예 : 하객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객의 접대를 음식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답례품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헌법상 혼인당사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제1호에 해당됨 |
| 3. 불공정한 해약금 조항 예 : 본 계약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565조)이라 볼 때, 사업자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제2호에 해당됨 |
| 4. 책임전가 조항 예 : 행사장이나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화재, 비품의 파손 및 분실, 기타의 사고에 대하여는 행사 주최측이 책임을 집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리(민법 제758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고의 책임을 행사 주최측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제2항에 해당됨 |

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관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위가 지난 5월 교복제조 3사 및 유통업체들의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이후, 교복 공동구매 활동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교복가격의 거품을 빼려면 공동구매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공동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저해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구매 방해 및 담합행위 등에 대한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

고, 향후 공동구매 방해, 입찰가격 담합, 순번제 낙찰 등 공동구매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구매와 관련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유형은 무엇이고, 법 위반사실 발견시 신고하는 요령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교복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소비자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교복 제조·유통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나 가격담합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년2회(동북·하북시즌) 교복시장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2001. 8. 6부터 9. 19까지 45일간 지방공기업 30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역독점적 사업이나 시설관리·의료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상담건수도 매년 3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정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규모가 크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기업 30개를 선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장례식장·체육시설·차량견인 등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끼워팔기, 이용요금 부당징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차별취급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및 불공정약관, 진입규제, 불합리한 계약관행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문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지방의 공공부문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6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공정위는 경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경쟁당국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제6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2001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대 호암생활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금 번 워크숍에는 OECD 경쟁정책회의 T. Winslow, S. Van Siclen 수석행정관, R.

Anderson, WTO 경쟁정책 담당과장, H. Qaqaya UNCTAD 경쟁정책과장, E. Mizrahi 멕시코연방경쟁위원회 과장 등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와 허선 공정위 정책국장, 안희원 경쟁국장 등 국내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였고, Viorel Munteanu 루마니아 경쟁위원회 위원장, Peteris Vilks 라트비아 경쟁위원회 위원장, Bambang Adiwiyoto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등 8개 APEC 국가를 비롯한 총 12개국 17명의 개도국 경쟁당국의 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화와 지식경제로 대변되는 21세기 경제환경에서의 경쟁당국간 협력 및 국제경쟁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전통적인 경쟁법이 가지는 국내적·속지적 성격으로 인해 외국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기업합병, 국제카르텔 등 새로운 경쟁문제



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역외적용으로 인해 국가간의 갈등이 깊어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 WT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쟁법의 국제규범화를 적극 지지, 21세기 세계경제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각국내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동 워크숍은 Global Competition Forum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쟁당국자들은 각국의 경쟁법 도입 상황 및 운영 경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태국은 “가격설정 및 반독점법”(1979)인 경쟁법 운용을 시작으로 1999년 4월 구법을 수정한 “재화, 용역의 가격 및 경쟁법”을 시행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93년 경쟁법을 시작으로 금년 10월부터 합병통제 절차와 국가보조금 지급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경쟁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의 “불공정 경쟁금지 및 독점에 관한 법”을 시작으로 현재는 “우크라이나 독점위원회법”과 “경제적 경쟁보호법”이라는 두 개의 법률을 통해 경쟁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멕시코의 '93년 경쟁법은 다른 중남미 국가의 경쟁법·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별주제로 다루어진 “혁신과 경쟁정책”에서 Sally Van. Siden OECD 경쟁정책위원회 수석 행정관은 신경제하에서의 혁신과 경쟁정책은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허선 정책국장은 “민영화 이후의 경쟁주창 역할”에 대하여, 민영화를 통해 공적독점이 단순히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의 전단계에 걸친 경쟁당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운영 경험이 현재 체제전환국에서 겪고 있는 국영기업의 재벌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1. 7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1년 7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7월 2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

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1년 7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3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1년 8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1년 7월 2일의 647개사에서 634개로 감소하였다.

◆ 2001년 7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 구분 | 2001. 7. 2. | 편입 | | | | 제외 | | | | | | 증감 | 2001. 8. 1 |
|-------|-------------|-------|-------|----|---|----|----|----|-------|----|----|-----|------------|
| | | 회사 설립 | 주식 취득 | 기타 | 계 | 합병 | 매각 | 청산 | 친족 분리 | 기타 | 계 | | |
| 전체 | 647 | - | - | - | 0 | 2 | - | - | - | 11 | 13 | △13 | 634 |
| 1~4대 | 204 | - | - | - | 0 | - | - | - | - | 9 | 9 | △9 | 195 |
| 5~30대 | 443 | - | - | - | 0 | 2 | - | - | - | 2 | 4 | △4 | 439 |

◆ 2001년 7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제외 : 13개사

| 기업 집단 | 제 외 | | |
|----------|---------------|----------------|-----------------|
| | 회사명 | 영위업종 | 사유 |
| 현 대 | 현대건설(주) | 건설업 | 기타(지분,임원변동) |
| | 현대엔지니어링(주) | 설계,용역업 | 현대건설 계열회사 |
| | 고려산업개발(주) | 건설업 | 기타(회사정리) |
| | (주)하이닉스반도체 | 영상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처분권위임) |
| | (주)현대큐리텔 | 전자제품제조업 | (주)하이닉스반도체 계열회사 |
| | 현대네트웍스(주) | 통신장비제조업 | " |
| | (주)현대유니콘스 | 서비스업(야구) | " |
| | 스페이스 브로드밴드(주) | 위성통신 서비스업 | " |
| | 이미지퀘스트(주)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 " |
| 한 솔 | 한솔홍진(주) | 상품종합중개업 | 한솔개발에 피합병 |
| | (주)경보 | 보관업 및 창고업 | " |
| 대 립 | 서울증권(주) | 증권거래업 | 기타(지분,임원변동) |
| | 한일투자신탁운용(주) | 투자신탁업 | 서울증권(주) 계열회사 |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부이사관 전보

경쟁제한규제개혁직업단장

주순식(前 정책개발기획단장)

☒ 서기관 전보

공보관실

오승돈(前 정책개발기획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도과장

김영철(前 공보관실)

☒ 서기관 승진

독점국 기업집단과

채규하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

안승수